

학 칙

제정 1996. 3. 1

개정 1996. 8. 1, 1996. 10. 28, 1998. 3. 1, 1998. 8. 1, 1999. 1. 1, 2000. 6. 15, 2001. 3. 1, 2002. 3. 1, 2003. 3. 1, 2004. 3. 1, 2005. 3. 1, 2006. 2. 3, 2006. 5. 17, 2006. 9. 15, 2006. 12. 15, 2008. 1. 8, 2009. 2. 26, 2010. 2. 26, 2010. 7. 27, 2011. 2. 23, 2011. 12. 28, 2012. 4. 27, 2012. 7. 16, 2013. 1. 16, 2014. 2. 28, 2014. 8. 28, 2015. 2. 27, 2015. 3. 13, 2015. 8. 19, 2016. 2. 15, 2016. 3. 11, 2016. 9. 12, 2016. 10. 26, 2017. 1. 9, 2018. 1. 3, 2018. 2. 2, 2018.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방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둔다.

- ① 모든 학과는 학생의 적성, 능력, 희망과 산업사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개설하고, 산학협동을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각 학과에 상응한 수준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는데 적합한 능력을 습득케 한다.
- ② 본 대학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학생의 수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비경감, 수업시간과 장소, 그리고 학급규모에 따른 제반 장애를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방학습제도를 발전시킨다.
- ③ 학생의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에 적합한 학습재료의 개발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면학풍토를 적극 조성한다.
- ④ 학점의 취득은 교과목에서 결정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 ⑤ 최신의 학습방법 및 산업정보의 수집과 그 활용에 주력하여 교육수준의 지속적인 향상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급격하고 광범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내용과 방법을 개발한다.
- ⑥ 성실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창조의 정신을 살려 부단히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높은 교양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직장의 발전에 건설적으로 봉사하는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관의 확립과 품격 도야에 힘쓴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문경대학교이라 한다.<개정 2011.12.28>

제4조(위치) 본 대학은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번지에 둔다.<개정 2011.12.28>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2.26, 2010.2.26, 2011.2.23, 2011.12.28, 2013.1.16, 2014.2.28, 2015.2.27, 2017.1.9, 2018.01.03>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유아교육과	21		21
재활상담복지과	25		25
사회복지과		35	35
군사학과	34		34
보건행정과	29		29
간호학과	120		120
호텔조리과	35		35
축구과	15		15
계	279	35	3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9.12>

제5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5조의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10.2.26.] <개정2018.01.03>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간호학과	20		20
유아교육학과		15	15
축구학과	15		15
계	35	15	50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3년, 간호과는 3년,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11.12.28, 2014.2.28>

제6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학칙이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1/4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재학연한) 본교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 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09.2.26, 2016.2.15>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26>

②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9.2.26>

제1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개교기념일(5월 25일)
4. 일요일
5. 국정공휴일

② 휴업일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2.26>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2.26>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는 수업,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개정 2017.1.9>

⑤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4장 학습형태

제12조(학습형태) ① 학습형태는 교과목 단위별 학습과정에 의거하여 교수 지도하의 출석학습을 이수케하고 출석학습 외에 자율학습 및 산업체 현장학습 등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을 이수케 할 수 있다.

② 출석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일제, 정시제, 계절제로 구분하여 수학기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3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총장이 따로 공고하는 모집요강에 의한다.<개정 2012.7.16>

제16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해당 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09.2.26, 2012.7.16>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2.26>

③ 삭제 <2012.7.16>

제16조의1(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3]

제17조(입학전형관리기구 설치·운영) ① 입학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2011.12.28>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2.28., 2012.7.16>

③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으로 위촉하지 않는다.<신설 2018.2.23.>

제18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2.26., 2018.2.23.>

② 입학허가 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로 합격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신설 2018.2.23.>

제19조(2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20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개시일(3·4년 제의 경우는 2학년 1학기 개시일 및 3학년 1학기 개시일)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된 과의 학생 및 전문대학·대학졸업자에 대한 편입학은 1학년 2학기 개시일(3·4년제의 경우는 2학년 2학기 개시일)에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② 편입학은 각 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편입학자의 전적교에서의 기 취득학점의 인정범위 및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 제21조(전과)**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1학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 ② 전과대상 학과의 범위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학과로 하며,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전출학과, 전입학과 기준)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과를 허가한다.
- ④ <삭제>
- ⑤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2.26>

- 제22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 ② 제26조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 또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업이수 능력과 인성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타 전문대학(4년제 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09.2.26>
- ③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3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휴학, 퇴학 및 제적

- 제24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9.2.26, 2016.9.12>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병의원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휴학이나 휴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관

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9.2.26>

④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09.2.26>

제25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2.26>

제2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09.2.26>

1.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두 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2중학적 보유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2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각 과정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 수도 있다.

②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09.2.26>

③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④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와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와 의무이수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및 인턴십의 학점 및 운용방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2.26>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⑦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 과정을 개발(개편)·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8.19>

제28조(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에는 1년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09.2.26, 2014.2.28>

제28조의2(시간제등록제 운영) ①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은 제외한다.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09.2.26>
 ③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50%이내로 하며,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09.2.26>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 등으로 선발하며,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시행은 모집시기에 공고한다.<개정 2009.2.26>
 ⑤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정은 학위과정 학생과 통합 운영하며,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2.26>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방학기간 중에 4주 이상의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도 있다.<개정 2009.2.26>
 ⑧ 기타 시간제등록제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28조의3(비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전공분야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11. 12. 28>

④ 기타 비학위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28조의4(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고등교육법제50조의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2내지제58조의4에 의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 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에서 소정의 학위심화과정을 이수 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기타 학위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개정 2010.2.26>

제28조의5(교육과정연계 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계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교육과정연계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28조의6(학점은행제 운영) ① 열린교육,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성인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28조의7(공개강좌) ① 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28조의8(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 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도 있다.

② 기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6]

제29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교과는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2.26>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의무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11.12.28>

-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4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9.2.26>
-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⑤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 및 인턴십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 ⑥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 후 입학한 자는 교양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 교육과정의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전 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범위 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2.26>
- ⑦ 학생이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1개 학기 내지 2개 학기 동안 본 대학의 자매결연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유학하여 본 대학 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유사과목을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 제29조의2(학점인정)** ①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6학점 이내로 한다.
- ③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⑤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9.2.26>

제30조(수업)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 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2.26>

제8장 성적평가및졸업

- 제31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 ②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의 4분의 10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2.26>
-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 ⑤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8.19>

제32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C0	74 - 70	2.0
A0	94 - 90	4.0	D+	69 - 65	1.5
B+	89 - 85	3.5	D0	64 - 60	1.0
B0	84 - 80	3.0	F	59점 이하	미취득
C+	79 - 75	2.5	P		불계

-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성적 및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01.03>
- ⑤ 성적 배점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33조(진급인원) 학년 진급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2011.12.28>

제34조(성적의 취소)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 ② 삭제 <2014.8.28>
- ③ 삭제 <2014.8.28>
- ④ 삭제 <2014.8.28>
- ⑤ 삭제 <2014.8.28>
- ⑥ 삭제 <2014.8.28>

제35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1. 매학기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자
2. 매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3. 성적이 불량하여 중도탈락이 예상되는 자

제36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하며, 각 교과 취득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2.26, 2011.12.28>

교과 \ 수업연한	2년제	3년제	4년제
교양교과	8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전공교과	64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100학점 이상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교과(22학점 이상)를 전공교과에 포함함)		
총계 (졸업최저이수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8>, <개정 2018.02.02>

학년 \ 수업연한	2·3년제	4년제
1학년	40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2학년	80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3학년	12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졸업유보) ① 졸업대상자 중 성적평가 결과 졸업 최저 이수학점 미만이거나 졸업 최저 이수학점 이상은 취득하였으나 의무이수과목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유보한다.<개정 2011.12.28>

② 졸업이 유보된 자의 기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③ 졸업유보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졸업이 유보된 자는 다음 학기에 졸업학점(의무이수과목 포함)을 취득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④ 졸업이 유보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미달된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졸업자격인증) ① 졸업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자격인증평가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자격인증에 관한 시행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36조의4(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2.27]

제37조(유급) ①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 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다만, 정교사 자격취득과 관련 되는 유아교육과 및 전문의료인을 양성하는 간호과에만 적용하며,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② 두 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제적한다.

제9장 학생활동

제38조(학생회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9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2.26>

제41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2.26>

②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42조의2(학생 집단활동 운영 대책) ① 교내·외 학생집단 활동 시 담당교수·주관학생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한다.

- ② 인권침해 사고 발생시 인권침해 행위자 및 연대책임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 ③ 학생 단체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인권침해 세부기준 및 사고발생시 처벌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26]

제4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2.26>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44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2.26>

제10장 규율과 상벌

제4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6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병의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9.2.26>

제47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9.2.26>

제4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9.2.26>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2018.01.03>

제11장 납입금

제50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2.28>

제51조(감면금지)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52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53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2.26>

제12장 장학금

제54조(장학금) ①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2017.1.9>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단, 등록 후 휴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9>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13장 교수회

제55조(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2.7.16>

제56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2.26>

②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교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2.26>

1. <삭제>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장 각종위원회

제57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산학협력처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정보전산원장, 평생교육원장, 도서관장, 학생생활관장, 산학협력단장, 창업보육센터장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2.26, 2011.12.28, 2016.9.12>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2.26>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2.26.>, <개정 2018.01.03>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무학사행정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8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학과별로 본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학과별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2.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협조
3. 산업체의 위탁교육

- 4. 기술개발공동연구 및 산업기술 정보수집
- 5.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58조의1(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도서관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대학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폐기
 - 3. 도서관 운영 및 정책 수립
 - 4. 도서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5.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와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시설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3.11]

제59조(기타위원회) ①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2009.2.26>

제15장 직 제

제60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개정 2011.12.28>

-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2.26>
 -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제60조의2(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9.2.26>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61조(직제) ① 본 대학에는 산학협력처, 교학처, 기획처, 사무처, 산학협력단과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28, 2016.02.15>

② 각 부서에 부서의 장을 보하고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 부서 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2.26, 2016.02.15>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02.15>

④ 산학협력단의 정관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2016.02.15>

제16장 학칙제·개정절차

제62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01.03>

제6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6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개정 2009.2.26, 2011.12.28>

제17장 부속기관·부설기관

제67조(부속기관·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개정 2009.2.26>

- 1. 부속기관
 - 가. 도서관
 - 나. 정보전산원
 - 다. 언론사<개정 2012.7.16>
 - 라. 삭제 <2012.7.16>
 - 마. 학생생활관
 - 바. 삭제 <2011.2.23>
 - 사. 국제교육원
 - 아. 삭제 <2014.8.28>
 - 자. 교수학습센터 <신설 2014.8.28>
 - 차. NCS지원센터 <신설 2014.8.28>
 - 카. 취창업교육지원센터 <신설 2014.8.28>
 - 타. 인성교양교육센터<신설 2018.02.02>

- 2. 부설기관
 - 가. 학생상담센터<개정 2018.02.02>
 - 나. 삭제 <2009.2.26>
 - 다. 삭제 <2009.2.26>
 - 라. 평생교육원
 - 마. 삭제 <2009.2.26>
 - 바. 창업보육센터
 - 사. 삭제 <2014.8.28>
 - 아. 삭제 <2015.2.27>
 - 자. 삭제 <2015.2.27>
 - 차. 삭제 <2015.2.27>

②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8장 학교기업

- 제68조(학교기업 설치)**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을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2.26>
- ② 삭제 <2010.2.26>
 - ③ 삭제 <2010.2.26>

제69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학교기업에서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인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0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

생 시 순이익의 20%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장 보 칙

제71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6개월이상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 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6>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자체평가) ① 본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타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2.26]<개정 2010.7.27>

제74조1(학사제도 평가 및 개선)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제도 운영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학사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한다.[본조신설 2016.02.15]

제75조(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 및 대학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4.27]

부 칙<1996.3.1>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8.1>

이 학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28>

이 학칙은 199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3.1>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8.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경전문대학 재학생은 이 학칙에 의거하여 문경대학의 재학생으로 본다.

제3조(교명변경에 따른 졸업생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계산과, 사무자동화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199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컴퓨터정보과, 사무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개정된 학칙이 적용되는 년도에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하는 자는 당해 학기부터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된 전자계산과(야간), 정보통신과(야간)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며, 졸업시에는 구 학칙에 의거 학과명을 표기하여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발급한다. 다만 이외의 사항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제5조(시행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시행세칙은 폐지하며,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9.2.26>

부 칙<2000.6.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1.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연한이 3년으로 변경되는 유아교육과, 건축디자인계열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제로 적용되며 종전 2년제로 입학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계열(학과)소속으로 하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부 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자동차기계계열, 외식창업경영과는 재적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복학시 해당 학과 및 학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1조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용한다. 다만, 유아교육과 및 간호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③ 폐과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부속기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교육원은 2003년8월8일부터 설치 운영한다.

부 칙<2005.3.1>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된 정보통신과, 건축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호텔관광경영과는 재적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며, 졸업시에는 구 학칙에 의거 학과명을 표기하여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발급한다. 다만 이외의 사항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6.5.17>

이 학칙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5>

이 학칙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된 경찰공무원과, 의료정보과(야간)는 재적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며, 졸업시에는 구 학칙에 의거 학과명을 표기하여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발급한다. 다만 이외의 사항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이 2년으로 변경되는 유아교육과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2년제로 적용되며 종전 3년제로 입학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 소속으로 하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부 칙<2008.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된 의료정보과, 의료기기과, 테마파크디자인과, 재테크정보관리과, 관광레저과, 경찰경호무도과는 재적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며, 졸업시에는 구 학칙에 의거 학과명을 표기하여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발급한다. 다만 이외의 사항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9.0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학교의 장(학장)으로 수여된 전문학사 학위는 이 학칙의 학교의 장(총장)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졸업및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교직교과에 대한 변경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0.0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10.07.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된 아동복지과, 영상문화콘텐츠과, 레저스포츠과는 재적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며, 졸업 시에는 구 학칙에 의거 학과명을 표기하여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발급한다. 다만, 이외의 사항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교무위원회)①항·제61조(직제)①항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제5조(설치학과및입학정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제60조(교직원)①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경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거하여 문경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교명변경에 따른 졸업생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학위(전문학사, 학사)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5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3년제 또는 4년제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단 2012·2013년 2·3학년 복학자는 3년제로 복학하며 진급 절차에 의해 4년제로 재학할 수 있다.

부 칙<2012.4.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14.2.28>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연한이 3년으로 변경되는 유아교육과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제로 적용되며 종전 2년제로 입학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 소속으로 하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부 칙 <2014.8.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9>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1>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12>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6>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18.01.0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18.02.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및수료관련 경과조치)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2016학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02.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0.2.26, 2011.2.23, 2011.12.28, 2013.1.16, 2017.1.9, 2018.01.03>

학위의 종별		
종별	학과	비고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열	
재활상담복지전문학사	재활상담복지과	
행정전문학사	부서관과	
군사전문학사	군사학과	
복지정보전문학사	복지정보과	
보건전문학사	간호과, 보건행정과	
관광전문학사	호텔조리과	
예술전문학사	도자기공예과	
체육전문학사	축구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별표 2]<신설 2010.2.26, 2018.01.03>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의 종별		
종별	학과	비고
간호학사	간호학과	
문학사	유아교육학과	
체육학사	축구학과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2.26, 2011.12.28>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문 경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9.2.26, 2011.12.28>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문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9.2.26, 2011.12.28>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 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
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문 경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 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문 경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